2008. 5. 14(수) 10:00

147회 거창군의회(임시회)
제 2 차 본 회 의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

심 사 보 고 서

총 무 위 원 회

【목　　차】

1.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……2

2.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……5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: 2008. 01. 11

○ 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8. 05. 08(제1차 총무위원회)

○ 의안번호 : 제2008 - 2호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개정이유

○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(2007. 12. 13. 공포)으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근거조항을 변경하고, 본청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의 직급을 조정하며, 기간이 만료된 한시정원을 감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목적 관련규정 근거조항 개정(안 제1조).

-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1조

⇒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
○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의 직급 조정(안 별표)

- 주민생활지원과장 : 5급 ⇒ 4급 또는 5급

○ 기간이 만료된 한시정원 조정(안 부칙 제2항)

-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 : 6급 1, 7급 1 ⇒ 삭제

○ 별표 :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이 개정 조례안은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별표 3의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서 “실·국 및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에 따라 실·국을 둘 수 없는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 실·과·담당관 중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한다” 라고 규정한 규정에 의거

-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현행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직급을 조정하고, 존속기간이 만료된 사업별예산제도의 한시정원 2명을 삭제 조정하는 것으로서,

○ 이 중 한시정원 2명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**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법령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**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: 2008. 04. 25.

○ 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8. 05. 08(제1차 총무위원회)

○ 의안번호 : 제2008 - 13호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개정이유

○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직제명을 변경하고, 지방공무원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 정산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우리 군 공무수행을 원활히 하고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○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규정을 삭제함(안 제3조)

○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항을 신설함(안 제4조, 별표 1)

-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에 따름

○ 중앙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명을 변경함(안 제5조제2호・제5호)

- 중앙인사위원회, 기획예산처장관 ⇒ 행정안전부장관, 기획재정부장관

○ 「공무원여비규정」 제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음(안 제5조제4호)

- 운임 및 숙박비 사후정산 증빙자료 징구와 장기교육(1개월이상)과정 사비 사용 후 정산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

○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 적용규정을 삭제하고,「거창군 관용차량 관리규칙」 적용규정을 신설함(안 제5조제7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이 개정 조례안은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로,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로 직제명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

○「공무원여비규정」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여비 정산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의 국내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정액제에서 실비지급제로 변경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도 동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왔으나 실비지급제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이를 정액제로 환원하기 위하여

○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4월 7일 지방공무원 여비 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의 지방자치단체의「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」이 통보되고 이 조례 표준안을 근간으로 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안건으로서,

○ 현행조례에서 운임과 숙박비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카드사용

또는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던 것을 운임(철도, 버스, 선박, 항공요금)과 숙박비를 정액제로 환원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